

금강대학교 대학평의회 규정

제 정	:	2006. 9. 1.
개 정	:	2007. 11. 1.
개 정	:	2008. 3. 1.
개 정	:	2020. 11. 27.
개 정	:	2022. 12. 27.
개 정	:	2025. 8. 1.
개 정	:	2025. 10.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제73조의2에 의하여 금강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7.>

제2조(사무관장) 평의회의 사무는 기획관리처 기획조정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8. 1.>

제3조(구성) ① 평의회의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회의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1. 27., 2022. 12. 27.>

② 평의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제73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7., 2022. 12. 27.>

③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조교 직위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본교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학생 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0.11.27.>

⑤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7.>

제4조(위촉) ① 교내 평의원의 위촉은 각 구성단위의 전체를 대표하는 회의에서 각각 정원의 2 배수를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교외 평의원의 위촉은 외부 인사를 원칙으로 하며, 건학이념과 대학 목적을 구현하고, 대학발전을 위한 자문 및 심의를 하는데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기능) 평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제7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22. 12. 27.>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학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개방이사추천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9. 그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2020. 11. 27.>

제6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7., 2022. 12. 27.>
② 의장 유고시 부의장이 대리한다.

제7장(의장 및 부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2. 12. 27.>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한다.
③ 의장은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의회 회의 소집 및 운영, 주요사항에 대한 안내, 회의록 작성 등 평의회 관련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2. 12. 27.>

제8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개방이사의 추천 절차) 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7.>
1.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법인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② 개방이사 선임대상자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자를 정관이 정한 개방이사 정수의 2배수 이상을 30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③ 추천위원회는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을 의뢰받은 이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한다. <개정 2022. 12. 27., 2025. 10. 20.>
④ 삭제 <2025. 10. 20.>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정관과 제3항을 준용하여 단수 추천한다. <개정 2025. 10. 20.>

제9조(회의) ① 평의회의 회의(이하 “회의” 라 한다)는 학기마다 의장이 정례적으로 소집한다. <개정 2022. 12. 27.>
②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동 규정 제5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이 발생할 경우
2.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4.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2. 27.>
④ 의장은 회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각 위원 및 법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27.>

제11조(규정변경) 삭제 <개정 2022. 12. 27.>

제12조(위임) 평의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위임장으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제13조(자료요청) 의장은 평의원회 요구에 따라 관계부처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